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2. 3. 22.

제안자 : 이근성 위원의외

1. 수정이유

위임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
 -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제한 ⇒ 삭제
(안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16호)
 -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
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지정 ⇒ 삭제
(안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나목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16호를 삭제하고, 17호 내지 43호를 각각 16호 내지 42호로 한다.

안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7호 나목을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 표

개 정 안				수 정 안			
분야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	분야별	일련 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보 건 위생과	1-15	<생 략>		보 건 위생과	1-15	<개정안과 같음>	
	16	○ 마약류관리자의 지점 제한	동법제37조		16	<삭 제>	
	17-43	<생 략>			16-42	<개정안과 같음>	
지 역 개발과	1-6	<생 략>		지 역 개발과	1-6	<개정안과 같음>	
	7	○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. 가림간판 규격의 설정 나.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지정	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제 1항, 동법시행 령제38조제6호			○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<개정안과 같음>	
	8-16	<생 략>			8-16	<개정안과 같음>	